

# 永樂帝의 말과 글

- 영락 연간 조선-명 관계의 두 층위 -

정동훈 \*

1. 서론
2. 홍무 · 건문 · 영락 연간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
3. 글로 짚긴 영락제의 말
4. 글로 짚기지 않은 황제의 말
5. 황제의 명령에 응하는 조선의 태도
6. 결론

## 1. 서론

洪武 31년(1398) 윤5월 10일, 홍무제가 세상을 떠났다.<sup>1)</sup> 재위 기간 내내 고려 · 조선을 무단히도 괴롭히던 절대 권력자가 양국 관계의 변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곧이어 명은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다. 南京의 建文 정권도, 北京에 근거를 둔 燕王 측도 모두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이 와중에 조선은 숙원이던 국왕의 諄命과 印章을 사여받았으며, 조선-명 관계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내전 끝에 帝位에 오른 永樂帝는 명대의 황제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던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유명한 鄭和의 해외 원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본인 스스로 다섯 차례에 걸쳐 몽골 공격에 나서기도 하였고, 安南을 침공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후연구원.

1) 『明太祖實錄』 권257, 홍무 31년(1398) 윤5월 乙酉(10일).

하여 한동안 직접 통치하기도 하였다. 여진족에 대한 초무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총 180여 부락에 衛所를 설치하기도 하였고,<sup>2)</sup> 환관 이시하[亦矢哈]를 파견하여 奴兒干都司를 설립하기도 하였다.<sup>3)</sup> 그는 쿠빌라이의 재래이자 그 후계자임을 자임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며,<sup>4)</sup> 중화세계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야심을 불태웠던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sup>5)</sup>

영락제는 조선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몽골 親征에 나서면서 필요한 戰馬를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였고, 요동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의 여진 집단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조선과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靖難의 役 당시 한반도로 이주한 漫散軍 송환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마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적 현안 외에도 영락제는 조선에 ‘개인적’이랄까 ‘사적’인 요구를 해오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美色을 갖춘 여성, 즉 貢女였다. 이밖에도 宦官으로 부릴 火者라든지 불교 관련 물품들을 보내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영락제가 조선과의 외교 방면에도 적극적이었음을 영락 연간의 사신 왕래 횟수에서도 잘 드러난다. 22년 동안 명 조정에서는 조선에 총 40번의 사신을 파견하여 연 평균 1.8회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명대 전체 연 평균 0.6회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조선 태종대 거의 전 시기와 세종 초년에 걸쳐 있는데, 영락 연간에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도 연 평균 7.6회에 이르러 전체 평균 4.6회보다 훨씬 빈번하였다.<sup>6)</sup>

따라서 영락 연간의 조선-명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

2) Henry Serruys, 1955 *Sino-Jürched Relations During the Yung-lo Period(1403-1424)*, Wiesbaden: Otto Harrassowitz, pp.25-28.

3) Morris Rossabi, 1999 *The Ming and Inner Asia,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8, The Ming Dynasty, 1368-1622,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宮崎市定, 1969 「洪武から永樂へ: 初期明朝政権の性格」『東洋史研究』27-4.

5) 그의 치세에 대한 전기적 서술은 檀上寬, 1997 『永樂帝: 中華「世界システム」への夢』, 東京: 講談社 및 Shih-Shan Henry Tsai, 2002 *Perpetual Happines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참조.

6) 이상 사신 왕래 횟수에 대한 분석은 高艷林, 2004 「明朝與朝鮮王朝之間的使臣往來」(The Final Research Results Supported by the KFAS International Scholar Exchange Fellowship Program), 1-8면 참조.

졌다. 정난의 역을 거치면서 양국관계가 겪은 변화상이라든지,<sup>7)</sup> 여진 관할권을 둘러싼 문제,<sup>8)</sup> 漫散軍 송환을 둘러싼 문제<sup>9)</sup> 등이 비교적 심도있게 다루어진 바 있고, 최근에는 영락~宣德 연간의 貢女 문제가 주목받기도 하였다.<sup>10)</sup>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양국 관계의 현안 그 자체를 중심에 두고 접근하였던 까닭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제기되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서 풀려나갔는지, 즉 제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된 바가 없다.

본고에서 검토할 것은 영락제의 뜻이 어떤 형태로 조선 조정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영락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조선 측에 표명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글, 즉 황제의 명령문서인 詔書나 勅書를 내리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방식은 말, 즉 구두 명령이었다. 조선 사신을 불러다가, 혹은 명에서 과견할 사신을 앞에 두고 진술한 황제의 말은 宣諭聖旨라는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전달되든지, 아니면 구두 메시지로써 그대로 조선국왕의 귀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뜻이 전달되는 경로는 홍무 연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는데,<sup>11)</sup> 그 방식의 대부분은 영락 연간에도 이어졌다.

이 가운데 조서나 칙서와 같은 공식적인 황제 명의의 문서는 그 작성 및 반포 절차 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sup>12)</sup> 조선에 발령된 황제 문서에 대해서는 명 국내에 반포된 그것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황제가 조선 문제에 대해 꺼낸 말이, 조선

7) 朴元熇, 1980 「明‘靖難의役’時期의 朝鮮에對한政策」『釜山史學』4; 朴元熇, 1983 「明‘靖難의役’에 대한 朝鮮의對應」『亞細亞研究』70.

8) 朴元熇, 1990 「永樂年間 明과 朝鮮間의 女真問題」『亞細亞研究』85;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真史の研究』, 京都: 同朋舍出版; 이규철, 2013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2장 태종대 대외정벌 정책의 추진과 시행’.

9) 강성문, 2000 「朝鮮初期 漫散軍의 流入과 送還」『韓民族의 軍事的傳統』, 봉명: 박성주, 2002 「15세기 朝明간 流民의 發生과 送還」『경주사학』21; 김경록, 2012 「朝鮮初期 軍人 送還問題와 朝明間 軍事外交」『軍史』83.

10) 林常薰, 2013 「明初 朝鮮 貢女의 性格」『東洋史學研究』122.

11) 정동훈, 2017 「洪武帝의 명령이 고려에 전달되는 경로: 聖旨의 문서화 과정을 중심으로」『東洋史學研究』139.

12) 萬明, 2010 「明代詔令文書研究: 以洪武朝為中心的初步考察」『明史研究論叢』8; 李福君, 2014 『明代皇帝文書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을 향한 詔勅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사례만을 모아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크게 1) 글로 작성된 것과 2) 말로 전달된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황제의 말과 글은 조선에 전달되기까지 각각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인물들이 개입하고 있었는지 등이 탐구의 주제가 된다. 글로 옮겨져 전달하는 사안들과 말로 전달하는 요구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또한 두 형태로 황제의 뜻을 표현, 전달하는 주체들에도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황제가 조선에 어떤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황제의 관심이 양국관계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우선 홍무 연간에 황제의 뜻이 전달되는 여러 절차에 대해 요약하고, 그 가운데 建文·永樂 연간에는 어떤 것이 활용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3장에서는 황제의 뜻이 글로 옮겨진 경우를, 4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말로 옮겨진 경우를 각각 검토해볼 것이다. 5장에서는 황제의 말과 글에 대한 조선 측의 대응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드러내는 이 시기 조선-명 관계의 두 층위를 정리해보겠다.

## 2. 홍무·건문·영락 연간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

필자는 다른 글에서 명의 개국 황제 홍무제의 말과 글이 고려·조선 조정에 전달되기까지의 경로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sup>13)</sup> 본고의 탐구 주제인 영락 연간의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무제가 고려와의 외교 문제에 대해 꺼낸 말이 고려 조정에 전달되는 경로는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황제 명의의 詔書이다. 詔書는 당대의 文衡들이 초안을 마련한 후 황제의 재가를 얻어 반포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문장은 매우 유려하였고, 거기에 표명된 양국관계는 이념형에 가까운 것으로 묘

13) 정동훈, 2017 앞의 논문.

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둘째는 홍무제 자신이 손수 지은 手詔이다. 홍무제는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手詔의 문장은 때로는 어법에 맞지 않았고 논리의 흐름도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황제가 직접 쓴 글이다 보니 거기에는 그 자신의 뜻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곤 하였다. 셋째는 問文 속에 인용되어 전달되는 방식이다. 황제가 내린 명령을 中書省이나 禮部와 같은 외교 담당 아문에서 관문서, 즉 問文으로 작성해서 고려국왕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담당 아문에서는 황제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것을 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황제의 발언 수위를 조절하거나 상황에 맞게 윤색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넷째는 황제의 말을 곧바로 받아 적은 語錄, 당시의 용어로는 宣諭聖旨의 형태이다. 황제가 쏟아낸 말을 그의 곁에 머물고 있던 문관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후 고려의 사신에게 주어 들려 보내는 경로이다. 이 과정에서 황제의 近侍들은 황제의 말을 빠르게 문자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선유성지는 대체로 구어체의 백화문으로 작성되었다. 다섯째는 황제의 말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명의 宮庭에서 일하고 있던 고려 출신 환관이나, 또는 漢語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고려의 사신이 황제를 대면하여 받든 명령을 고려 조정에 와서 구두로 전달하는 사례가, 특히 홍무 연간 후반에 자주 나타났다.

재위 기간이 4년 정도로 짧았지만, 건문제의 시대에는 위와 같은 경로 가운데 소수만이 활용되었다. 건문제는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손수 지은 詔書를 조선 국왕에게 보내 조선에서 말 3천 필을 보내온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다.<sup>14)</sup> 그는 조선에서 태조가 定宗에게 讓位한 일을 승인한다는 뜻을 표하거나,<sup>15)</sup> 정종이 태종에게 傳位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이를 승인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두겠다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고,<sup>16)</sup> 바로 며칠 후에는 태종의 즉위를 승인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sup>17)</sup> 또한 태종에게 諧命과 印信을 수여하겠다는 聖

14) 『태종실록』 권2, 원년 9월 丁亥(1일).

15) 『정종실록』 권1, 원년 6월 丙寅(27일).

16) 『태종실록』 권1, 원년 3월 乙丑(6일).

17) 『태종실록』 권1, 원년 윤3월 甲辰(15일).

旨를 내리기도 하였다.<sup>18)</sup>

주목되는 것은 건문제가 성지를 내린 대상이 모두 명의 관원이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건의 성지가 발령된 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조선국왕이 예부에 자문을 보내 태종의 즉위를 승인하고 고명·인신을 내려줄 것을 청하면, (2) 예부에서는 朝會 자리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황제에게 보고를 올린다. (3) 황제는 그 자리에서 예부상서 등의 관원에게 성지를 내려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4) 예부에서는 그 내용을 자문으로 작성하여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다. 홍무 연간의 聖旨 전달 방식 가운데 세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에 건문제가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을 인견하거나, 혹은 자신이 조선에 파견할 사신에게 직접 구두 지시를 내려 그것을 조선에 전달하게 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위에 열거한 홍무 연간의 방법 가운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즉 宣諭聖旨나 구두 메시지 전달 방식은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약관을 갓 넘겨 즉위한, 비교적 젊은 황제가 老成한 조부처럼 만사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며 외교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황제의 명령을 듣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의 관부를 통해 일단 걸러진, 정제된 메시지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 황제의 실제 의도를 알아차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영락제의 시대에는 홍무제 때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었다. 황제의 뜻이 조선 조정에 전달되는 절차와 경로는 홍무 연간과 영락 연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굳이 차이를 꼽자면, 홍무제가 간혹 보내던 手詔를 영락제는 재위 기간 중에 한 번도 보낸 일이 없었다는 점, 홍무 연간에는 보이지 않던 勅書의 형태가 영락 연간에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문서로 자주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정도이다.<sup>19)</sup>

18) 『태종실록』 권1, 원년 6월 己巳(12일).

19) 영락제가 조선국왕을 수신자로 하여 칙서를 보낸 사례는 매우 많은데, 『태종실록』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사례는 태종 3년(1403) 4월에 전달된, 태종에게 誥命과 印章을 사여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태종실록』 권5, 3년 4월 甲寅(8일). 그 문서는 “皇帝勅諭朝鮮國王諱.”로 시작해서 “故茲勅諭, 宜體至懷.”로 끝맺는, 명대 勅書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명 관계에서 칙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그 성격 등에 대해서는 후고

영락제의 말이 전달되는 경로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위에서 열거한 방식 가운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즉 건문제 때에는 보이지 않던 宣諭聖旨와 구두 메시지이다. 그 형태나 절차 자체는 홍무 연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영락 연간에는 홍무 연간보다 선유성지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되는 일이 훨씬 잦아졌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폭도 넓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영락 연간에 명에서 조선 조정에 파견한 사신의 명단을 제시하고, 특히 그들이 전한 황제의 메시지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sup>20)</sup>

〈표 1〉 영락 연간(1402-1424) 조선에 파견된 명 사신 목록

연번	연월일	메시지 형태	사신	내용
1	태종2. 10.12.	조	都察院僉都御史 愉士吉, 鴻臚寺少卿 汪泰, 內史楊寧	영락제 등극 선포
2	태종3. 4.8.	고명/ 척/ 선유	都指揮 高得, 通政司左通政 趙居任, 太監 黃儼·曹天寶, 宦者 朱允端·韓帖木兒	태종 책봉 / 誥命·印信 사여 경과 설명 / 漫散軍 송환 지시
3	태종3. 8.10.	조/ 자	宦官 田畦·裴整, 紿事中 馬麟	太祖 高皇帝 시호 가상
4	태종3. 10.27.	자	內官 黃儼, 翰林待詔 王延齡, 行人 崔榮	冕服·서책 등 하사
5	태종3. 11.1.	선유	(宦官) 韓帖木兒	火者 60명 선발 요구

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 20) 아래의 표는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우선 연월일은 해당 사신이 서울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 편의상 날짜는 모두 실록에 기재된 음력 그대로이다. 사신의 명단은 실록에 기재된 순서를 따랐는데, 正使·副使 등 사신단 내부의 위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태종 3년 4월에 태종 책봉을 위해 파견된 명 사신 일행은 誥命을 전하는 정사와 부사,勅諭를 전하는 정사와 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각각 따지지 않고 하나의 사신단으로 묶어서 표시하였다. 명에서 파견되어 서울에 왔던 사신 가운데에는 조선국왕을 대상으로 한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요동 일대의 漫散軍이나(태종 3년 1월 13일), 女眞에게 보내는 문서를 지닌 채 서울을 들렀다가 가는 경우(태종 4년 4월 4일, 12월 3일) 등도 있었고, 명 중앙조정이 아니라 遼東都司에서 파견한 경우(태종 3년 10월 18일, 9년 12월 21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위의 표에서 제외하였다. 메시지 형태는 실록에서 확인되는 것만을 기재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신은 그 파견의 목적이나 경위를 담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6	태종4. 4.18.	자	掌印司卿 韩帖木兒, 鴻臚寺序班 鄭修, 行人 李榮	요동에 소 1만 필 무역 요구, 화자 선발 요구
7	태종4. 6.10.	조	內史 楊進保, 紿事中 欽惟善	횡태자 책봉 포고
8	태종4. 11.6.	칙	宦官 劉璟, 國子監丞 王峻用	소 1만 필 교역에 사의
9	태종5. 3.11.	칙	王教化的	童猛哥帖木兒 姜裕에 협조 요청
10	태종5. 4.6.	자	內史 鄭昇 · 金角 · 金甫	화자 보낼 것 요구
11	태종6. 3.19.	선유	內史 鄭昇	만산군 쇄환 요구, 종이와 황모란 요구
12	태종6. 4.19.	칙/자	內史 黃儼 · 楊寧 · 韩帖木兒, 尙寶司尙寶 奇原	동불상 요구 / 만산군 송환 요구 / 맹가첩목아 친속 송환 요구
13	태종6. 윤7.9.		內史 朴麟 · 金禧	악기 사여
14	태종6. 12.22.		內史 韩帖木兒 · 楊寧	銅佛 대가로 비단 · 서적 등 사여
15	태종6. 12.22.	자	東寧衛千戶 金聲, 百戶 李賓	만산군 송환 요구
16	태종7. 1.26.	자	東寧衛千戶 陳敬	만산군 전자수 등 송환 요청, 진주여 진 해송
17	태종7. 5.1.	조	內史 鄭昇, 行人 馮謹	안남 평정 포고
18	태종7. 5.18.	칙	司禮監太監 黃儼, 尙寶司尙寶 奇原	불사리 요청
19	태종7. 6.15.		內史 金得 · 金壽	(앵무새 3쌍 하사)
20	태종7. 8.6.	자/선유	欽差內史 韩帖木兒 · 尹鳳 · 李 達 · 金得南	화자 요청
21	태종8. 2.7.	자	千戶 陳敬, 百戶 李賓	만산군 송환 요청
22	태종8. 4.16.	칙	內史 黃儼 · 田嘉禾 · 海壽 · 韩帖 木兒, 尚寶司尙寶 奇原	말 교역에 감사, 국왕에 선물 증여
23	태종8. 9.24.		都知監左少監 祁保, 禮部郎中 林觀	태조 상에 사제, 사부, 사시
24	태종9. 5.3.	칙/선유	太監 黃儼, 監丞 海壽, 奉御 尹鳳	국왕과 왕비에게 하사, 공녀 요구
25	태종9. 10.21.	칙/선유	內史 黃儼	말 교역 요구
26	태종9. 11.6.		內史 祁保	말 교역 촉구, 처녀 진현 촉구
27	태종9. 11.18.		內史 海壽	(칙서 전달)
28	태종10. 10.9.	칙/자	太監 田嘉禾, 少監 海壽	북정에 말 1만 필 교역한 것을 포장 / 말값 지불 통보
29	태종11. 8.15.	자/선유	太監 黃儼	약재 사여 / 불경 서사를 위한 종이 진현 요구
30	태종17. 7.13.	칙	太監 黃儼, 少監 海壽	국왕에게 비단 등 하사
31	태종17. 12.29.	칙	內史 奉御 陸善財	공녀 진현 대가로 국왕에게 은녕 등 하사

32	세종0. 9.4.	칙	宦官 陸善財	세자 책봉 인정. 명칭가곡 1천 권 하사
33	세종1. 1.19.	고명/ 선유	太監 黃儼, 光祿少卿 韓確, 鴻臚寺丞 劉泉	세종 책봉 / 화자 40명, 불경지 2만 장 청구
34	세종1. 8.17.	칙	太監 黃儼	전위 승인
35	세종1. 8.21.	제사	欽差官 王賢	광록소경 정윤후 제사
36	세종2. 4.8.	제사	禮部員外郎 趙亮, 行人 易節	정종 제사
37	세종3. 9.21.	칙	少監 海壽	말 1만 필 교역 요구. 상왕·국왕에 게 비단 사여
38	세종5. 4.6.	자/고명 /제사	內官 劉景, 禮部郎中 楊善	태종 고명과 제문 전달
39	세종5. 8.18.	칙/선유	內官 海壽, 禮部郎中 陳敬	세자 책봉, 말 1만 필 교역 요구 태종의 환관 50명 보낼 것 요구
40	세종6. 6.26.		內史 王賢	한씨의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냄

위의 <표 1>을 보면 영락 연간에 명 중앙조정에서 조선에 총 40회의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신은 대부분 황제가 발령한 詔書나 勅, 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작성된 예부의 자문 가운데 하나 이상을 조선 측에 전달하였다. 문서화된 황제의 명령 외에도 황제의 구두 메시지(宣諭)를 전달했음이 실록의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례도 총 8번이 있다. 그러나 뒤에서 검토해볼 것처럼 명목상의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영락제는 조선에 파견하는 사신 편에 자신의 명령을 구두 메시지 형태로 전달하는 일이 기록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자주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에 온 사신단 가운데 환관이 매우 많았다는 점이다. 40회 가운데 환관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는 단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연번 9, 15, 16, 21, 36).<sup>21)</sup> 홍무 연간 말년, 고려 창왕대 이후 고려·조선에 파견된 사신들이 모

21) 다섯 차례의 예외 가운데 9) 王教化的은 童猛哥帖木兒에게 보내는 勅書를 가지고 그에게 가는 길에 서울에 들러 거기에 협조하라는 勅書를 태종에게 전달한 것이니, 엄밀한 의미에서 조선 조정을 대상으로 파견된 사신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15)와 16), 21)의 사신으로 열거된 東寧衛 千戶 金聲·陳敬 등은 禮部 명의의 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태종 6년~8년 무렵 만산군 송환을 위해 요동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관인들로, 京師에서 직접 파견된 사신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朝官만으로 구성된 사신단으로는 세종 2년에 定宗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파견된 사례(36)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고려 출신 환관들이었는데,<sup>22)</sup> 그 경향이 영락 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sup>23)</sup> 특히 黃儼이 총 11차례, 海壽와 韓帖木兒가 각각 7차례, 奇原와 鄭昇이 각각 3차례 등 몇몇 환관들은 반복해서 조선을 찾으며 황제의 입 구실을 하였다. 이들 환관 사신들은 공식적인 의례의 장에서 황제 명의의 조서나 칙서를 전달하는 외에도, 연회의 자리에서, 혹은 국왕을 따로 면담한 자리에서 황제의 내밀한 요구를 내놓았다. 명령의 내용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글로 옮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장을 바꾸어서 황제의 말이 글로 옮겨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 3. 글로 옮긴 영락제의 말

영락제는 서로 다른 여러 환경에서, 여러 장면에서 조선과의 외교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전술하였다. 때로는 조정의 신료들이 모두 모인 朝會 자리에서, 때로는 조선의 사신, 혹은 조선에 파견될 명의 사신만을 따로 불러 앉힌 자리에서. 그 장소 또한 다양했다. 南京, 혹은 北京의 궁궐에서, 남경과 북경 사이를 왕래 하던 도중에, 때로는 몽골 친정 도중의 行在所에서 자신의 뜻을 밝혔다. 이를 황제의 말씀, 즉 聖旨를 듣는 대상별로 유형화해보면, 1) 조선의 사신, 2) 명에서 파견할 사신(주로 환관), 3) 명의 朝官 등이 모두 있었으며, 황제의 말이 문자로 옮겨지는 경로를 나누어 보면 1) 조선의 사신이 기록해서 전하는 방법, 2) 명의 사신이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방법, 3) 명의 禮部 등 담당 아문에서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 홍무제 때의 방식이 모두 동원되었다. 이 가운데 3)의 절차를 거치면 황제의 말이 問文에 인용되는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면, 1)과 2)를 통해 전달되는 황제의 말씀은 사료에서 모두 ‘宣諭聖旨’라고 기록하였다. 수많은 사례

22) 정동훈, 2013 「명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려의 위상」 『역사와 현실』 89, 119면.

23) 명초 환관들의 활발한 외교 활동과 그들의 효용에 대해서는 孫衛國, 1994 「論明初的宦官外交」 『南開學報』 1994年 第2期 및 全淳東, 2012 「明初 宦官의 外交 活動 實態와 그 性格」 『中國史研究』 77 참조.

가운데 주목되는 몇 가지만을 제시해보겠다.

먼저 명 사신이 황제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영락제의 성지를 조선에 파견될 사신이, 혹은 예부 등의 관원이 받아서 전달하는 사례이다. 영락제가 즉위한 이듬해인 태종 3년(1403), 태종에게 고명과 인신을 사여하기 위해 파견한 사신단의 일원이었던 黃儼은 황제가 발령한 諸命과 勅書를 전달한 후, 따로 태종에게 宣諭聖旨를 전하였는데 그 장면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신 黃儼 등이 가지고 온 宣諭聖旨는 다음과 같았다. “永樂 원년 2월 8일에 奉天門에서 아침 조회 때 선유성지가 있었습니다. ‘建文 때에 도망치고 흩어진 사람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람도 많으며 몇몇은 거기로 가기도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돌아오라고 알려주고, 국왕에게 말하여 하나하나 모두 송환해오라고 하라.’

같은 날 禮部尙書 李至剛이 예부에서 말하였습니다. ‘上位께서 聖旨를 내리셨다. 「조선의 일이라면 印信·諸命과 曆日을 너희 예부에서 모두 처리하여 그에게 주어 보내라.」 (중략) 이 사안은 가장 중요한 일이니 너는 이러한 뜻의 이야기를 국왕에게 말해주어 上位의 두터운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라.’”<sup>24)</sup>

인용문 앞부분의 聖旨는 黃儼이 직접 받은 것이고, 뒷부분은 禮部尙書가 들은 후 황제에게 알려주며 조선국왕에 전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 부분을 실록의 地文에서는 사신 황제 등이 ‘가지고 온[齋來]’ 선유성지라고 표현하였다. 이 표현으로만 보면 큰 따옴표 안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문서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황제가 내뱉은 말이 황제에게 한 것이든, 예부상서에게 한 것이든, 그것은 모두 일단 문서화된 후 사신의 손에 의해 조선국왕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조선 사신을 직접 인견하여 황제가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한 일도 있었다. 다음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24) 『태종실록』 권5, 3년 4월 甲寅(8일). 使臣黃儼等齋來宣諭聖旨內, “永樂元年二月初八日, 奉天門早朝宣諭聖旨。‘建文手裏, 多有逃散的人, 也多有逃去別處的, 有些走在爾那裏, 爾對他每說知道回去, 對國王說, 一介介都送將來。’同日禮部尙書李至剛, 於本部說道, ‘上位有聖旨, 「但是朝鮮的事, 印信·諸命·曆日, 懈禮部都擺布與他去。」(中略) 這件最是打緊的事, 爾把這旨意的話, 對國王說, 休要撇了上位的厚恩。’”

韓尙敬이 北京에서 돌아와서 啓하였다. “황제께서 奉天門에 임어하시어 아침 조회를 하실 때 물으시었습니다. ‘高麗 北門에 어떤 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약탈했다지?’ 저희가 그 연고를 갖추어 상주하였고, 또한 아뢰었습니다. ‘본국에서 李玄·朴惇之를 차정하여 두 차례 와서 상주하였는데, 마침 大駕가 北巡 중이셨던 까닭에 이현은 이미 환국하였고 박돈지는 東宮에 아뢰고자 南京으로 갔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朕이 아직 너희 나라 문서를 보지 못하였다. 이 兀良哈이 진짜로 이렇게 무례하다면 나는 遼東의 軍馬를 조발하여 갈 것이니 너희도 군마를 조발해 와서 이놈들을 깨끗하게 죽여버리자.’ 황제께서 또한 通事 元閔生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야인들은 조정의 무거운 상과 큰 직책을 받았다. 金帶·銀帶를 사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초유하고 안무하였는데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海青을 잡으려 간 指揮를 불잡아 노비로 삼아 사환하기도 하였고, 또 일찍이 우리 변방으로 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은혜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러하니, 너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해아리기에는 너희 쪽에서 열 사람이 저들 한 사람을 대적하여 깨끗이 죽여야 한다.’ 원민생이 상주하였습니다. ‘아직 밝은 명을 받지 못하여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이후로 다시 이렇게 무례하게 군다면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침략해오지 않는다면 양쪽이 화친하라.’ (후략)”<sup>25)</sup>

조선의 사신 韓尙敬과 그 사절단의 通事 元閔生이 황제와 나눈 대화 내용을 귀국 후 국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이다. 사신은 자신이 황제와 만난 장면과 거기서 나눈 대화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국왕에게 전하고 있다. 여기서 황제의 말은 예컨대 “어떤 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다지? [不知甚磨人來搶人口?]” “이 이후로 다시 이렇게 무례하게 군다면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這已後還, 這般無禮, 不要饒了.]”와 같이 아주 거친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세세한 대화 내용을 전적으로 사신이나 통사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귀국한 후에 보고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아마도 황제가 조선 사신 일행을 접견하였을 때에 그 곁에 있던 近侍들이 황제의 언동을 낱낱이 기록한 후, 그것을 조선

25) 『태종실록』 권20, 10년 9월 丁卯(3일). 韓尙敬回自北京, 啓曰. “帝御奉天門, 早朝宣問, ‘高麗北門上, 不知甚磨人來搶人口?’ 尙敬等具奏其故, 且奏, ‘本國差李玄·朴惇之, 二次來奏, 適以大駕北巡, 玄已還國, 惇之欲啓于東宮如南京.’ 帝曰. ‘朕不會見爾國文書. 這兀良哈, 真箇這般無禮. 我調遼東軍馬去, 爾也調軍馬來, 把這廝殺得乾淨了.’ 帝又謂通事元閔生曰. ‘這野人受朝廷重賞大職, 賜以金帶·銀帶, 招安如此, 忘了我恩, 打海青去底指揮, 拿做奴婢使喚, 又嘗一來擾我邊. 有恩的, 尙或如是, 爾莫說了料着. 爾那裏十箇人敵他一箇人, 要殺乾淨.’ 閔生奏曰. ‘未蒙明降, 不敢下手.’ 帝曰, ‘這已後, 還這般無禮, 不要饒了. 再後不來打攪, 兩箇和親.’ (후략)”

사신에게 건네주었고, 그것을 토대로 당시 장면을 재구성하여 사신 한상경이 귀국 보고를 올린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장면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1) 千秋使 尹穆과 計稟使 李行 등이 京師에서 돌아왔다. (중략) 李行이 와서 宣諭聖旨를 전하였다.

“(중략) (예부 관원이) 또한 문기를, ‘어제 너희들에게 전해준 성지와 너희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기에 앞선 대화를 하나하나 외워서 대답하니 그를 듣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중략) (영락 3년 7월) 25일 早朝에서 하직인사를 한 후 예부상서와 左右侍郎 등이 저희를 이끌고 상주하기를, ‘조선국왕이 보내온, 猛哥帖木兒에 관해 상주하려 온 사신이 오늘 하직하고 돌아갑니다. 신 예부에서 그에게 문서를 주어 보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주해서 온 이야기가 같지 않고, 또 무슨 중요한 일도 없으니 단지 이렇게만 해서 그를 돌려보내라.’라고 하시었습니다.”<sup>26)</sup>

위 사례에서 조선의 사신 李行은 예부 관원을 통해 황제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를 기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내용을 ‘외워[誦]’ 대답하였다고 한다. 황제 역시 “상주해온 이야기가 같지 않다[奏將來的話不同]”는 이유로 예부에 굳이 문서를 써서 보내주지는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 李行의 보고에는 오류가 있었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가-2) 戶曹參議 李玄을 京師에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영락 3년 9월 16일에 陪臣 李行 등이 경사에서 돌아와 예부상서 李至剛 등의 관원이 삼가 전한 宣諭聖旨를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猛哥帖木兒는 어째서 보내오지 않고 도리어 와서 計稟하는가. 네가 와서 계품할 때 곧 그와 함께 와서 그 지역 사정을 나누어 해명하였다며 어찌 너희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겠는가. 누가 너희와 지역을 다투겠는가. 너는 돌아가서 국왕에게 말해 곧바로 그를 보내오라고 알리라.’ 臣은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중략) 신은 아직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

26) 『태종실록』 권10, 5년 9월 庚戌(18일). 千秋使尹穆, 計稟使李行等, 回自京師. (중략) 李行來傳宣諭聖旨. “(중략) 又問, ‘昨日傳與爾每聖旨爾的話, 都記得麼?’ 將前話一一誦對, 聽之欣然還入. (중략) 二十五日早朝辭後, 禮部尙書左右侍郎等引奏, ‘朝鮮國王差來奏猛哥帖木兒使臣今日辭回. 臣禮部家合回與他文字去.’ 上曰, ‘奏將來的話不同, 又無甚磨縫要句當, 只這般教他回去.’”

나 지연될까 우려하여 당일 즉시 上護軍 曹愬을 차정해서 밤낮으로 萬戶 맹가첩목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항상의 명에 따라 朝廷으로 가는 길을 제촉하게 하였습니다.”<sup>27)</sup>

가-3) 奏聞使 戶曹參議 李玄이 京師에서 돌아왔다. 이현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있는데, 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영락 3년 12월 4일, 조선국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陪臣 李行 등이 경사에서 돌아와서 전하기를, 황제께서 「猛哥帖木은 왜 보내오지 않는가? 너는 돌아가서 국왕에게 이야기하여 빨리 보내오라고 하라.」라고 하셨다고 하기에 배신 이현을 차정하여 자문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니 그해 7월 25일 早朝에, 본 예부의 관원이 차정되어 온 이행 등을 인도해서 奉天門에서 상주하여 그 국왕에게 회답문서를 보내줄지 여부를 여쭙고서 聖旨를 받았는데, ‘사신들은 돌려보내되 문서는 주지 말라. 그가 상주한 말이 맹가첩목이 말한 것과 많이 다르니, 맹가첩목이 올 때를 기다려보면 자연히 할 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때 이행 등이 직접 성지를 들었고, 본 예부 또한 이런 사정을 재차 그에게 전해주어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자문을 보내왔는데, 살펴보니 원래 받든 성지의 뜻과 같지 않으니, 이는 명백히 배신 이행 등이 전한 것이 잘못되고 와전된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조선국에 자문을 보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일체의 사무는 반드시 문서에 근거하여 따르도록 하시고, 또한 구두로 전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시행하십시오.”<sup>28)</sup>

조금 복잡한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計稟使 李行은 명조정에서 童猛哥帖木兒를 招諭하는 것을 그만두고 두만강 일대에 그대로 살게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맹가첩목아를 비롯한 그 지역의 여진 집

27) 『태종실록』 권10, 5년 9월 壬子(20일). 遣戶曹參議李玄如京師, 奏曰. “永樂三年九月十六日, 陪臣李行等回自京師, 傳奉禮部尙書李至剛等官欽傳宣諭聖旨, 節該. 「猛哥帖木兒怎磨不送將來, 却來計稟. 爾來計稟時, 便同他一處來, 就分說地面事情, 怎磨不準爾. 誰和爾爭地面, 爾回去對國王說知, 便送他來.」欽此. 臣兢惶無措. (중략) 臣尚未委端的, 懸恐遲延, 當日即差上護軍曹愬, 星夜馳赴萬戶猛哥帖木兒在處, 催督欽赴朝廷.”

28) 『태종실록』 권11, 6년 정월 丁酉(6일). 奏聞使戶曹參議李玄回自京師. 玄齋禮部咨文而來, 咨曰. “永樂三年十二月初四日, 淮朝鮮國咨該, 「陪臣李行等自京師回, 傳欽奉該, 「猛哥帖木, 怎磨不送將來? 爾回去, 國王說的, 便送他來.」等頃緣由, 差陪臣李玄, 齋文移咨施行.」查得, 本年七月二十五日早, 本部官將引差來人李行等於奉天門, 題奏合無回與他國王文書, 奉聖旨, ‘着使臣每回去, 無文書與他. 他的奏詞, 與猛哥帖木說的多不同, 等猛哥帖木來時, 自有說話.’欽此. 當即李行等面聽聖旨, 本部又將前因, 再行傳與各人, 回還去訖. 今咨前因, 查與元奉旨意不同, 現是陪臣李行等所傳差訛. 理合移咨本國知會. 今後一應事務, 須憑文書爲準, 又有口傳事理, 宜字細參詳施行.”

단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영락 3년(1405) 7월 25일, 李行 등이 예부 관원을 따라 황제에게 하직 인사를 올릴 때, 예부관이 조선국왕에게 회답 문서를 보내줄지 여부를 물었다. 이때 영락제는 “조선국왕의 말과 猛哥帖木兒의 말이 다르니, 문서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성지를 내렸다(가-1)). 이에 이행은 빈손으로 돌아와 자신이 겪고 들은 전후 사정을 국왕 태종에게 보고하였다. 이행의 귀국 보고가 있은 이틀 후, 태종은 예부에 자문을 보내, “猛哥帖木은 어째서 보내오지 않는가. (중략) 너는 돌아가서 국왕에게 곧바로 그를 보내오라고 말하라.”라는 聖旨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그에 대해 해명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취지의 말은 이행이 황제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예부상서 李至剛으로부터 건네 들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화되지 않은 채 구두로 전달되었다(가-2)). 그런데 명 측에서는 맹가첩목아를 보내오라는 것이 황제의 뜻이 아니며, 이행이 잘못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부에서는 자기 아문의 장관이 조선 사신에게 한 말을 뒤집고서, 성지의 내용을 사신이 잘못 이해해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바람에 생긴 오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李行으로서는 억울할 법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명 측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반드시 문서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만약 구두로 전달하는 일이 있으면 전후 사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대처하라고 주문하였다(가-3)).

영락제의 말이 문서로 작성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전달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태종 7년 8월 29일, 앞서 啓稟使로 파견되었던 僕眉壽 일행의 書狀官 鄭穉가 먼저 復命하였다. 태종은 그에게 “황제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치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황제가 사신 설미수에게 귀국하여 국왕에게 말 교역을 요청하라는 분부를 내린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나-1) 황제께서 西角門에 임어하시어 설미수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는 말이 나는 땅이다. 돌아가 너희 왕에게 보고하고, 좋은 말 3천 필을 네가 가지고 오너라. 짐은 戶部로 하여금 布와 紗을 요동에 보내 그 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하시었습니다.<sup>29)</sup>

29) 『태종실록』 권14, 7년 8월 庚戌(29일). 又帝御西角門, 命眉壽曰, “爾國產馬之地. 歸報爾王,

그리고 열흘 뒤인 9월 10일, 이번에는 正使 설미수가 복명하면서 예부의 자문을 국왕에게 전달하였다.

나-2) 馬匹에 관한 일. 兵部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락 5년 7월 15일 아침 조회 때, 조선국 사신 설미수가 西角門에서 삼가 聖旨를 받들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말이 나는 곳이다. 지금 조정에 말이 조금 필요하니 너는 돌아가서 국왕에게 말해주어 말 3천 필을 교환하자고 하라. 너는 곧 돌아가서 가지고 오너라. 값은 戶部로 하여금 布와 緝을 요동으로 운송해서 너희에게 주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시었습니다.” 마땅히 조선에 자문을 보내니 준행하십시오.<sup>30)</sup>

나-1) 鄭輝가 들은 바를 보고한 것과 나-2) 傢眉壽가 가지고 온 예부의 자문에 인용된 聖旨는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태종실록』에 기록된 성지의 문체는 완전히 다르다. 똑같이 “너희 나라는 말이 나는 곳이다”라는 황제의 말씀을 전자에서는 “爾國產馬之地”라고 하여 문어체로 서술하였고, 후자에서는 “恁國裏是出馬的去處”라고 하여 구어체로 서술하였다. “국왕에게 보고하여”라는 말도 “歸報爾王”와 “恁回去說與國王知道”로, “호부로 하여금”이라는 말도 “以戶部”와 “着戶部家”라고 하여, 단어와 문법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는 황제의 말을 서장관 정치가 옆에서 들었거나 혹은 설미수에게서 전해들은 뒤 그것을 태종에게 구두로 보고한 것을 태종의 곁에 있던 史官이 문어체로 옮겨 적은 것이고, 후자는 황제가 말을 하던 그때 그 곁에 있던 侍臣이 그 말을 빠른 속도로 받아 적다보니 구어체가 그대로 생동감있게 살아남게 된 것이다. 앞서 제시한 李行의 사례와 같이 황제의 말을 들은 조선 사신이 그것을 기억해서 돌아가 보고했다가는 황제의 뜻이 와전될 수 있었으므로, 성지는 곧 바로 문서화되어 예부의 자문에 인용되는 방식으로 조선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황제의 말이 宣諭聖旨라는 형태로 문서화되어 전달된 경로를 검토해

良馬三千匹, 汝可將來. 腓以戶部布緝送于遼東, 當酬其直.”

30) 『태종실록』 권14, 7년 9월 庚申(10일). 一件馬匹事. 準兵部咨開. “永樂五年七月十五日早, 該朝鮮國使臣 僉眉壽, 於西角門, 欽奉聖旨. ‘恁國裏是出馬的去處. 如今朝廷要些馬用, 懈回去說與國王知道, 換馬三千匹, 爾就送將來. 價錢, 着戶部家運將布緝去遼東還恁’欽此. 除欽遵外, 移文.” 到部. 合咨本國, 欽遵施行.”

보았다. 선유성지는 조서나 칙서와 같이 詞臣들의 기초를 거쳐 발령되는 일반적인 황제 명의의 문서와는 달리, 황제의 말을 近侍들이 곧바로 받아 적은 것이며, 그것을 그대로 사신에게 들려 보내는 방식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홍무 연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락제의 선유성지는 구어체로 작성되어 황제의 의중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다.

#### 4. 글로 옮기지 않은 황제의 말

그러나 실제로 모든 황제의 말이 문서화된 것은 아니었다. 명에서 파견된 사신이 구두로 황제의 지시를 전달한 사례가 자주 보인다. 예컨대 태종 6년 3월에는 명의 사신 內官 鄭昇이 “宣諭를 전하고 태종이 끓어 앓아 이를 들었다[昇傳宣諭, 上跪聽訖]”고 하는데, 그 내용은 황후가 쓸 노란 모란을 구해오라는 것이다.<sup>31)</sup> 또한 태종 8년 4월에는 사신 黃儼 등이 파견되어 왔는데, 그의 주된 목적은 말 1만 필의 값을 조선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勅書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黃儼은 그와 별개로 “조선국왕에게 이야기해서 예쁜 여자를 몇 명 골라서 데리고 오라.[恁去朝鮮國, 和國王說, 有生得好的女子, 選揀幾名將來.]”는 선유성지를 받았음을 알렸다.<sup>32)</sup> 그리고 이듬해 5월에 조선을 다시 찾은 황임은 앞서 국왕이 뽑아 보낸 여자들이 예쁘지 않으니, 많으면 두 명, 적어도 한 명을 새로 뽑아서 보내라는 성지를 구두로 전하였다[口宣聖旨].<sup>33)</sup>

이렇게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된 성지 가운데는 황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 혹은 사람 요구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조선에 여성을 보내라는 요구였고,<sup>34)</sup> 이외에도 火者를 보내오라

31) 『태종실록』 권11, 6년 3월 己酉(19일).

32) 『태종실록』 권15, 8년 4월 甲午(16일).

33) 『태종실록』 권17, 9년 5월 甲戌(3일). 太監黃儼, 監丞海壽, 奉御尹鳳至. (중략) 儼口宣聖旨, “去年爾這裏進將去的女子每, 胖的胖, 麻的麻, 矮的矮, 都不甚好. 只看爾國王敬心重的上頭, 封妃的封妃, 封美人的封美人, 封昭容的封昭容, 都封了也. 王如今有尋下的女子, 多便兩箇, 小只一箇, 更將來.”

거나,<sup>35)</sup> 불경을 필사할 종이,<sup>36)</sup> 佛舍利<sup>37)</sup> 등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명에서 파견된 환관 사신들이 성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때로는 조선 사신단의 일행 가운데 通事가 이와 같은 황제의 명을 전하기도 하였다.<sup>38)</sup>

물론 이러한 요청은 황제 명의의 勅書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sup>39)</sup> 더 내밀하게 사신의 입을 통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의 사례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1) 戸曹參議 吳眞을 파견하여 京師에 가게 하였다.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영락 7년 5월 3일 欽差 太監 黃儼이 본국에 이르러 삼가 宣諭를 전하였습니다. ‘작년에 너희가 보낸 여자들은 모두 별로 좋지 않다. 다만 너희 국왕이 공경하는 마음이 무거운 것을 보아 妃로 봉할 것은 비로 봉하고, 美人으로 봉할 것은 미인으로 봉하고, 昭容으로 봉할 것은 소용으로 봉하여 모두 봉하였다. 왕은 지금 찾아놓은 여자가 있거든 많으면 두 명, 적으면 한 명이라도 다시 보내라.’ 臣 某는 삼가 聖旨를 받들어 본국의 서울과 각 道의 府·州·郡·縣의 宗戚과 문무 양반 및 軍民의 집에서 정성을 다해 찾아 여자 2명을 골라서 진현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여자들의 생년월일 및 아비의 직사(職事)와 성명 및 적관(籍貫)을 하나하나 열거해 적어 삼가 갖추어 상주합니다.” (중략)”

禮部에 咨文을 보내었다. “삼가 살피건대 친형 某가 본래 風病을 앓고 있었는데 요즘 더욱 심해져서 약을 쓰고 있습니다. 약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吳眞을 차정하여 黑細麻布 30필, 白細苧布 20필, 그리고 藥單 1장을 가지고 경사에 가게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상주해주시어 구매를 허락하여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34) 영락 연간과 선덕 연간, 명의 7차례 요구에 응하여 조선에서는 총 114명의 공녀를 진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林常薰, 앞의 논문 참조.

35) 『태종실록』 권6, 3년 11월 乙亥(1일); 권7, 4년 4월 戊子(18일); 『세종실록』 권3, 원년 1월 甲子(19일); 권21, 5년 8월 丁卯(19일). 명은 15세기 내내 조선에 火者를 요구하였는데, 국초부터 성종 14년(1483)까지 90여 년 동안 모두 15차례에 걸쳐 총 207명의 화자가 명에 보내졌다고 한다. 鄭九先, 2004 「鮮初 朝鮮出身 明 使臣의 行蹟」 『경주사학』 23, 114면.

36) 『태종실록』 권22, 11년 8월 甲辰(15일); 『세종실록』 권3, 원년 1월 甲子(19일).

37) 『세종실록』 권5, 원년 9월 庚申(18일).

38) 『태종실록』 권33, 17년 4월 庚申(4일). 賀正使通事元閔生回自京師, 密啓帝求美女也.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황은 『태종실록』 권33, 17년 5월 壬寅(17일)에서 확인된다.

39) 銅佛 요구는 『태종실록』 권11, 6년 4월 己卯(19일). 佛舍利 요구는 『태종실록』 권13, 7년 5월 辛未(18일).

황엄이 왔을 때에 황제가 다시 처녀를 구하였던 까닭에 상왕의 병 때문에 약을 구매한다고 칭탁하고 정윤후의 딸 등의 일을 상주한 것이다. 황엄이 일찍이 말하기를 만약 絶色을 얻으면 곧 반드시 다른 일을 칭탁하여 아뢰라고 했기 때문이었다.<sup>40)</sup>

다-2) 조정 사신 宦官 太監 黃儼이 왔다. (중략) 황엄이 예부의 자문을 내놓았는데, 자문은 다음과 같았다. “근래에 조선국왕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차정하여 藥單을 가지고 경사에 가서 구매하게 합니다.’ 본 예부의 관원이 다음과 같이 삼가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약재는 그에게 사게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라.’ 삼가 준행하여 점고해서 완비한 외에 欽差 태감 황엄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열거하자면 약재는 29味입니다.” 대개 지난해 鄭氏가 경사에 갔을 때 자문을 보내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황엄이 또한 말하였다. “황제께서 다시 姿色이 있는 처녀를 구하십니다. 鄭允厚의 딸을 얻은 일은 朝官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기에, 왕이 약물을 구한 것에 답하는 것처럼 가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여하신 약물은 실은 정씨가 경사에 온 것을 보답하는 것입니다.”<sup>41)</sup>

명의 사신 太監 黃儼은 황제가 다시 처녀를 구한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답은 다-1) 앞부분의, 황제에게 올린 奏文이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는 황엄의 요청에 따라 이번 사신 파견의 ‘공식적’인 목적을 “다른 일을 칭탁하여”, 상왕의 신병 치료를 위한 약재 구입으로 하였다. 그것이 표명된 것이 다-1) 뒷부분의, 예부에 보내는 啓文이다. 다시 명 측에서 보인 반응이 다-2)에 담겨 있다. 조선에서 공식적인 명목으로 내세운 약재 구입 요청에 대해서는 역시 예부 명의의 자문을 통해 답변을 내리고, 실제 이유였던 공녀 건에 대해서는 사신 黃儼의 입을 통해 재차 요구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다른 일을 칭탁하여 이 사안을 처리한 것은, 황엄의 표현을 빌자면 “朝官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2)</sup>

그렇다면 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황제 측근의 환관들이었을 것이다. 영락제는 靖難의 變을 일으킬 당시 南京의 건문 조정에서 달아난 환관들로

40) 『태종실록』 권18, 9년 8월 甲寅(15일).

41) 『태종실록』 권22, 11년 8월 甲辰(15일).

42) 실제로 영락제와 선덕제는 조선에 공녀를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을 관료들과 황족들이 모르게 추진하였다고 한다. 林常薰, 앞의 논문, 176-177면 참조.

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燕王府에서부터 종사하던 환관들 역시 여러 차례 군공을 세우며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sup>43)</sup> 따라서 영락제는 재위 기간 내내 환관들을 중용하였고, 특히 외교 방면에서 각지에 파견하는 사신에 환관들을 널리 활용하였다.<sup>44)</sup> 이러한 배경에서 영락 연간 이후 환관들은 사신으로서 외국에 파견되어 황제의 구두 명령을 전달하는 데에 크게 활약하였다.<sup>45)</sup> 황제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에 환관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심부름꾼이었다.

황제의 말을 곧이곧대로 문서화하지 않고 사신의 입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도 있었다.

欽差內史 韓帖木兒·尹鳳·李達·金得南 등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다. (중략)  
 자문에 이르기를, “예부상서 趙狃이 삼가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너희 예부에서는 곧 바로 문서를 보내 조선국왕에게 火者를 보내와서 여기서 쓸 수 있게 하라고 알려라.’”  
 韓帖木兒가 聖旨를 구두로 전하기를, “(중략) 단 자문에는 그 수를 한정하지 말라. 만약 짐이 수를 정해놓았는데 국왕이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국왕이 지성으로 짐을 섬기는 뜻에 상처를 줄까 걱정된다.”  
 주상이 사적으로 한첩목아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뜻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한첩목아가 말하기를, “3~400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다.<sup>46)</sup>

황제는 예부상서에게 聖旨를 내려 조선에 火者를 요청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는 그 수효를 정해두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의중을 사신으로 파견될 환관 한첩목아에게는 넘지시 내비추었던 것이다. 영락제는 만약 정해진 수효를 채우지 못할 경우, “국왕이 지성으로 짐을 섬기는

43) 全淳東, 2009 「明朝 前期 宦官 势力의 推移와 機能」 『中國史研究』 61, 68면.

44) Shih-shan Henry Tsai, 1996 *The Eunuchs in the Ming Dynast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122-135; 정동훈, 2013 앞의 논문, 129-133면.

45) 정동훈, 2013 앞의 논문, 140-141면.

46) 『태종실록』 권14, 7년 8월 丁亥(6일). 欽差內史韓帖木兒·尹鳳·李達·金得南等, 齋禮部咨來. (중략) 咨曰, “本部尙書趙狃欽奉聖旨, ‘恁禮部便行文書, 與朝鮮國王知道, 取火者來, 這裏使用.’” 韩帖木兒口宣聖旨, “(중략) 但咨文內不限其數者. 若朕有定數, 而國王不能充額, 則恐傷國王至誠事朕之意.” 上私謂韓帖木兒曰, “帝意如何?” 帖木兒曰, “不下三四百.”

뜻에 상처를 줄까” 우려스럽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조선이 다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영락제 스스로도 권위에 손상을 입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었다. 어떤 요구든지 그것이 명확하게 수치화되어 제시될 경우, 단지 군주의 권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양국 관계 전체가 경색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황제는 자신의 요구를 문서화, 공식화하지 않고 구두 메시지로 전달함으로써 본인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위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영락제가 조선 측에 말 교역을 요청한 장면에서도 보인다. 황제는 몽골 친정에 필요한 말 교역을 조선에 요구하면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勅書에서는 “형편에 따라 얼마간을[隨進多少]” 보내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의 사신 黃儼은 칙서를 건넨 후 곧이어 宣諭聖旨를 전하였는데, 거기서는 “조선의 말은 체구가 비록 작지만 쓸 만하니 왕은 그를 보내오라.”라고 하며, 좋은 말을 골라서 가져올 것을 당부하였다. 行禮를 마친 후 이어진 대화에서 사신 황엄은 몇 마리나 보낼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국왕 태종은 “어찌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sup>47)</sup>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문서로 제시했다가 그 수치 자체에 발목을 잡혀 빠질 수 있는 갈등을 미리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황제의 뜻을 글에 다 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황제의 명령에 응하는 조선의 태도

글에 담긴 황제의 명령은 대체로 무난한 것이었다. 말 교역을 요구할 때에는 몽골 정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火者를 요구할 때에도 그 수효를 명기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본심은 그의 명을 받들고 온 환관 사신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곤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조선으로서는 따르기 쉽지 않은 것도 많았다. 화자를 3~400명씩이나 보내라는 것이나, 황제의 취향에 맞는 姿色이 있는 처녀를 보내오라는 일, 불교를 배척하는 것을

47) 『태종실록』 권18, 9년 10월 己未(21일).

국시로 삼고 있던 조선 조정에 佛舍利나 銅佛像을 요구하는 일 등등. 더군다나 환관 사신들은 황제의 요구를 조선 측이 이행하는 데에 직접 소매를 걷고 나서 기도 하였다. 명 宮廷에 보낼 치녀를 선발하는 데에 관여하기도 하였고,<sup>48)</sup> 동불상이나 사리를 겉어가기 위하여 전국을 헤집고 다니기도 하였다. 심지어 황업은 불상을 가지고 와서는 국왕에게 절하기를 요구하여 태종을 진노하게 하기도 하였다.<sup>49)</sup> 더군다나 이들은 조선 조정에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조선 측에서 받은 물건의 호불호를 따지기도 하였고,<sup>50)</sup> 그것을 쌓아놓을 창고를 지어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으며,<sup>51)</sup> 그것을 사적으로 매매하여 이문을 남기고자 하기도 하였다.<sup>52)</sup> 특히 조선 출신 환관들은 고국에 남아있는 자신의 친척들을 쟁기는 일에도 매우 꼼꼼하였다.<sup>53)</sup> 이들 환관 사신들은 유교 소양을 갖추고 과거에 합격해 관직생활을 하고 있는 朝官들과는 달리 禮를 지켜야 한다는 관념, 혹은 체면이나 염치 따위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이 영락제가 그들을 조선에 보내는 사신으로 선발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황제의 무리한 요구, 사신들의 무례한 행태에 대해 조선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미리 결론을 밝히자면 조선 측에서는 환관 사신들의 행보에 치를 떨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빠짐없이 들어주었다. 이들이 전하는 황제의 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진위를 의심하거나, 혹

48) 황업은 태종 8년 7월 2일부터 그해 10월 11일까지 98일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경복궁에서 치녀를 선발하였다. 한 번에 적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300명에 이르는 치녀들의 美色을 품평해가면서 고르고 골라, 마지막으로 5명을 선발해서 데리고 돌아갔다. 이런 일은 이듬해인 태종 9년에도 반복되었는데, 황업은 그를 전송하러 온 국왕에게, 선발한 치녀가 미인이 아니니 다시 구해놓고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기도 하였다.

49) 『태종실록』 권12, 6년 7월 乙巳(18일).

50) 『태종실록』 권22, 11년 8월 甲辰(15일).

51) 『태종실록』 권34, 17년 7월 丁卯(14일).

52) 『태종실록』 권34, 17년 8월 丙戌(3일).

53) 이밖에도 黃儼과 海壽 등 명에서 파견된 환관 사신들은 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토색질과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陳學霖, 1997 「明永樂朝宦禍擧隅: 黃儼奉使朝鮮事蹟綴輯」 『明代人物與傳說』,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및 陳學霖, 2001 「海壽: 永樂朝一位朝鮮籍宦官」 『明代人物與史料』, 香港: 中文大學出版社에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은 그 내용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왕의 반응은 태종의 그것과 세종의 그것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

태종은 영락제의 말과 반응을 살피는 데에 각별히 주의를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명에 다녀온 사신들을 불러다가는 황제를 알현했는지, 황제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고는 하였다. 예컨대 태종 7년(1407)에 計稟使의 서장관으로 다녀온 鄭輝가, 황제가 말 무역을 요청하는 와중에 安南을 정벌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너희 왕은 讀書人이라고 하니 (중략) 네가 돌아가서 집을 위해 자세히 왕에게 고하라.”라고 말하였다고 전하자, 태종은 “이게 무슨 말인가. 황제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陪臣에게도 후회 대접해주시었으니 어찌 감히 명을 여기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sup>54)</sup> 태종 10년(1410)에는 조선의 통사가 요동에서 명의 환관을 만나, “황제와 당신네 국왕이 父子 사이처럼 친하다는 것은 당신네 나라 신하들도 아는 바입니다.”라고 하면서 몽골 원정을 위한 말을 진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하자, 태종은 “사대의 예는 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실행을 손수 챙겼다.<sup>55)</sup> 그는 비록 영락제의 親征이 명분 없는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었으나,<sup>56)</sup> 명의 직접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다. 영락 연간 명의 거듭되는 대외 원정을 바라보며 태종이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특히 영락 11년(1413) 이후 황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北京에서 보내면서, 또한 자주 북방으로 친정을 나서면서 태종을 비롯한 조선 조정은 황제의 위엄과 명의 군세를 훨씬 가깝게 느끼면서, 그들의 동태를 주시하며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에 파견된 환관 사신들의 행패에 대해서는 태종 역시 진노하곤 하였다. 예컨대 태종 9년(1409) 사신 海壽가 義州에 이르러 조선의 지방관을 이유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종은 “내가 마음속으로 하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성으로써 사대하는 것인데, 천자는 朝官을 파견하지 않고 宦侍에게 명

54) 『태종실록』 권14, 7년 8월 庚戌(29일).

55) 『태종실록』 권19, 10년 2월 癸卯(6일).

56) 『태종실록』 권19, 10년 2월 庚戌(13일).

하니, 오기만 하면 혹은 탑을 내고 혹은 포학하여 무례한 짓을 자행한다.”고 탄식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海壽의 행태를 낱낱이 적어서 實封해서 아뢰고 싶으나, 중국이 바야흐로 어지러운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하루아침의 분 때문에 백년의 근심을 끼칠까 우려된다. 내가 참이야겠다.”고 물러서고 말았다.<sup>57)</sup> 환관 뒤에 놓인 황제, 명의 힘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며칠 뒤 요동의 정세를 탐지하고 돌아온 通事는 해수가 다녀간 것은 조선이 몽골과 내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다는 풍문을 전하기도 하였다.<sup>58)</sup>

태종의 저자세는 그가 상왕으로 물러난 후에도 끝까지 유지되었다. 세종 3년 (1421) 다시 海壽가 와서 말 1만 필을 교역하자는 勅書를 전하자, 상왕 태종은 “어려운 일이어도 힘을 다해야 할 것인데, 이런 일은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sup>59)</sup> 그런데 태종의 이러한 대응에는 속셈이 있었던 것 같다. 위의 대화가 있은 지 사흘 후, 태종은 세종의 元子, 즉 훗날의 文宗을 해수에게 소개하며, 그를 世子로 책봉하는 데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수는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사흘 전 태종에게 들었던 대답을 그대로 돌려주었다.<sup>60)</sup>

두 차례의 정변을 거치며 아버지와 형을 연달아 왕위에서 몰아내고 즉위한 태종은 그 자신이 정통성을 내세우기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는 데 명에서 고명을 받은 점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말 교역 등은 거기에는 따른 비용이었다.<sup>61)</sup> 그런데 실상 그 비용은 일회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명에 부채의식을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명의 팽창적인 대외정책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인지, 아마도 양자가 복합되었던 까닭에 태종은 재위 내내 영락제의 요구, 그리고 그를 전하는 환관들에 저자세로 일관하였다.

57) 『태종실록』 권18, 9년 11월 癸未(15일).

58) 『태종실록』 권18, 9년 11월 丙戌(18일).

59) 『세종실록』 권13, 3년 9월 辛巳(21일).

60) 『세종실록』 권13, 3년 9월 甲申(24일).

61) 남지대, 2013 「조선 태종의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 『한국문화』 63, 254-261면 및 270-272면 참조.

조선 측에서 명의 환관 사신들의 요구에 적극 응했던 이유의 한 가지로는 그들이 가진 특수한 지위를 들 수 있다. 예컨대 황염은 태종으로부터 용승한 대접을 받은 뒤 귀국하는 길에, “다른 사람은 황제 앞에서 모두 아릴 수 없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殿下의 성의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面奏하겠습니다.”라고 빼기면서, 장차 世子를 入朝시키면 자신이 그 접대를 담당하겠노라고 큰소리를 쳤다.<sup>62)</sup> 실제로 이듬해에 세자가 입조하였을 때 황염이 날마다 會同館을 찾아 그를 대접하였다고 한다.<sup>63)</sup> 영락 연간에 환관들이 외교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조선 조정은 이들 환관 사신들을 넉넉하게 우대함으로써 명 조정 내에 든든한 우군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왕실의 권위에 직결되는 왕위 인정, 후계자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 황제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황제에게 발언력이 큰 환관들의 환심을 미리미리 사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환관 사신들의 행적을 검토했던 陳學霖은,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표현한 ‘事大의 至誠’의 정도는 결국 사자가 받아서 돌아가는 貢物이나 賞賜(뇌물)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었으며, 조선국왕이 至誠을 표하고 명 조정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이들 사신이 황제에게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평설한 바 있다.<sup>64)</sup> 매우 적절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자는 거기에다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낸 제도적, 관행적 요인을 한 가지 추가하고 싶다.

명 측에서 황제의 메시지를 조선에 전달하는 주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禮部를 비롯한 정식 관료체계에서 활동하는 朝官들이다. 이들은 대조선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며, 황제 명의의 조서나 칙서의 초안을 짓거나, 혹은 황제의 명을 받아 자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설정한 외교의 목적은 명 국가, 적어도 명 중앙정부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유교적 원리, 이른바 禮治의 틀 속에서 구현하는 데에 있었다. 다른 하나는 황제의 측근에서 그를 보필하는 宦官들이다. 그들은 황제의 말

62) 『태종실록』 권13, 7년 6월 戊子(6일).

63) 『태종실록』 권15, 8년 4월 乙未(17일).

64) 陳學霖, 2001 앞의 논문, 155-156면.

을 직접 듣고, 머릿속에 새겼다가 조선에 가서 그대로 풀어놓는, 절차적으로 매우 단순한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황제의 개인적인 기호를 맞추는 것, 그래서 황제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있을 뿐이었다. 적어도 영락 연간에 황제의 뜻을 조선에 전하는 데에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정확하였으며, 더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으로서는 이들을 접대하는 데 소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종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영락제는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뜻을 전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그를 인정하여 세종의 誥命을 보내왔다.<sup>65)</sup> 그러나 영락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왕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다. 이듬해인 세종 2년(1420) 조선에서 올린 奏本에 날짜를 써넣지 않았던 점을 들어, 영락제는 “너희 老王은 나를 至誠으로 섬겼는데, 小王은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며 자신의 조선 출신 後宮의 오라비인 韓確을 시켜 국왕을 타이르게 하였다.<sup>66)</sup> 세종은 이튿날 곧바로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문책하였다.<sup>67)</sup>

父王의 생전에는 나이 어린 세종이 명과의 관계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태종이 흥서한 이후 세종은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았다. 태종에게 제사를 지내고 謚號를 내리기 위한 사신이 다녀가고서 처음 세종의 조정을 찾은 명 사신은 다시 악명높은 해수였다. 그는 말 1만 필을 교역하자는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며, 동시에 老王을 섬기던 환관 30~50명을 보내오라는 황제의 말을 구두로 전달하였다.<sup>68)</sup> 세종은 해수에게 따르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해수는, “나는 이미 선유성지를 전했으니, 이 일은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며 강경하게 나왔다.<sup>69)</sup> 그가 귀환길에 義州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은 “나는 至誠으로 저들을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은 것이 없으며 중여한 물건도 수백 수천 가지나 된다. 그런데 지금 불의한 짓으로 우리 변방의

65) 『세종실록』 권3, 원년 1월 甲子(19일). 이때 고명을 가지고 온 사신도 황엄이었다.

66) 『세종실록』 권7, 2년 3월 丁亥(19일).

67) 『세종실록』 권7, 2년 3월 戊子(20일).

68) 『세종실록』 권21, 5년 8월 丙寅(18일).

69) 『세종실록』 권21, 5년 8월 丁卯(19일).

장수를 육보이니, 그 심히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朝臣을 보내지 않고 宦侍에게만 맡기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성을 내었다. 여기까지는 태종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태종 9년 당시와 같이 영락제는 몽골 친정 중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이어서 “나는 이 일을 上國에 알리고자 하는데,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실제 행동에 나서려고 하였다.<sup>70)</sup> “내가 참아야겠다.”고 물러섰던 태종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태종이 부리던 환관을 보내오라는 자신의 명을 세종이 이행하지 않자, 영락제는 다시 세종이 자신을 지성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화를 내었다.<sup>71)</sup> 다만 이 말을 끝으로 영락제가 붕어하면서 양국관계가 경색되기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에 환관 사신을 연달아 보내면서 황제가 구두 메시지로 貢女를 비롯해서 각종 물자를 징발해가거나, 황제를 등에 업은 환관 사신들이 토색질을 일삼는 일은 宣德 연간(1425~1435)에도 내내 지속되었다. 세종은 환관들이 전하는 황제의 요구가 과연 황제의 명이 맞는지 자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황제의 끊임없는 요구는 正統帝가 즉위한 이후에야 사그라지게 되었고, 그제야 환관들의 횡포도 잡잡해지게 되었다.<sup>72)</sup>

## 6. 결론

영락제는 그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상징하는 것처럼 조선에 대해 무수히 많은 말을 쏟아내었다. 조선에 관한 영락제의 명령은 조선 사신을 만난 자리에서, 조정의 고위 관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혹은 자기 측근의 조선 출신 환관들을 곁에 둔 자리에서 내려졌고, 그 성지는 勅書라는 형식의 황제 문

70) 『세종실록』 권21, 5년 9월 乙巳(27일).

71) 『세종실록』 권25, 6년 7월 辛巳(8일).

72) 선덕·정통 연간의 황제의 宣諭聖旨 내용과 그에 대한 조선의 반응, 그리고 그것이 조선-명 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서를 통해, 禮部의 咨文을 통해, 혹은 조선이나 명 사신의 구두 전달을 통해 국왕의 눈과 귀에 들어갔다. 그 내용도 여진 문제를 둘러싼 갈등부터 처녀와 화자 요구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었다. 영락 연간은 황제의 말씀이 조선에 전달되는 경로가 모두 가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글에 담긴 황제의 뜻은 국가적 차원의 현안을 다루는 것이었다. 칙서를 통해 영락제는 조선에 만산군을 송환할 것을 지시하고, 몽골 정벌을 위한 말을 교역 할 것을 요구하며, 여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공적 영역의 외교에 대한 것이었다. 반대로 글로 읊기지 않고 명의 환관이나 漢語에 능통한 조선 사신을 통해 구두로 전달된 황제의 뜻은 그것과 거리가 있었다. 貢女를 요구한다든지, 조선에 살고 있는 자신의 후궁들의 친족을 살뜰히 챙긴다든지, 심지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보내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자에 비하면 사적인 관심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관장했던 명 조정의 인물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황제의 글을 담당하는 인물들, 즉 朝官들이다. 다른 하나는 황제의 말을 전하는 인물들, 주로 宦官들이다. 전자에게 조선이 공적 외교의 상대이자 중화 세계의 그럴싸한 동반자였다면, 후자에게 조선은 황제의 사적인 기호를 채워줄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양자 가운데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황제의 뜻을 전하는 인물들로는 후자, 그것도 조선 출신의 환관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였다. 조선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일이었다.

본고에서 副題로 삼은 영락 연간 조선-명 관계의 두 층위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外朝, 즉 예부 등 관료체제의 일원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국가 대 국가 차원의 공적인 외교이다. 다른 하나는 內朝, 즉 환관들이 주된 행위자로 나서서 황제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에 주력하는, 일종의 사적인 행위이다. 고려·조선 시대 1천 년에 이르는 한중관계 전체를 조망해보건대 전자, 즉 유교적 명분에 따르며 제도화된 공식 외교관계는 거의 항상 존재하였다. 반대로 후자, 즉 황제 개인이 전면에 나서서 대외관계의 변수가 되었던 시기는 13세기 후반 고려-몽골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몽골 황실과 고려 왕실이 통혼으로 맺어지고, 양국 조정의 유력자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

계가 강하게 얹히게 된 시점에서 외교는 교섭의 테이블 위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래에서 행해지는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서로 의지를 표명하는 것보다도 대면해서 나눈 대화가 더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충렬왕이 장인인 쿠빌라이의 궁정을 찾아가 누적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 일을 꼽을 수 있다.<sup>73)</sup> 원의 武宗·仁宗과 충선왕이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역시 양국 관계의 항배를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하였다. 順帝 때에는 황제가 직접 나서는 일은 찾아들었으나 奇皇后的 입김이 작용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外朝가 주관하는 일상적인 외교 외에 황제가 주도하는 관계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는 개별 황제의 정무처리 스타일, 혹은 조선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 살핀 영락제는 대외관계에서만큼은 만기친립의 태도를 보였으며, 조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를 품고 있었다. 그의 손자이자 그를닮고 싶어 했다고 전해지는 宣德帝(재위 1425~1435) 역시 특히 조선 출신 여성을 비롯해서 조선의 물산에 호기심이 많았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환관들은 바쁘게 북경과 서울 사이를 오갔다. 이 쟁위의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지게 된 것은 8살의 나이로 正統帝가 즉위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로 명말까지 제위에 오른 황제들은 대체로 政事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영락~선덕 연간 전성기를 누렸던 조선 출신 환관들도 점차 활동 반경이 좁아졌고, 세대가 단절됨에 따라 자연 도태되었다. 조선-명 관계는 전에 비해 훨씬 의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개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조선-명 관계가 조선 세종대 중반 이후 '안정화'되었다는 식의 서술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양국 모두 건국 초기의 정열이 식어서일 수도 있겠으나, 더 직접적으로는 명 황제들이 조선에 품은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락제는 조선에 유교적 禮治의 원리를 보편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천하 군주로서의 자신의 위신을 세우며, 나아가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무역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시적이고 이념적인 데에도 물론 관심이

73) 이에 대해서는 정동훈, 2017 「고려 원종·충렬왕대의 친조 외교」 『한국사연구』 177 참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국적 자색을 갖춘 미녀, 수족처럼 부릴 영리한 심부름꾼, 심지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과 그것을 조리할 줄 아는 요리사 등등을 조선에 기대했다. 그에게는 무엇이 더 중했을까. 수치를 따져 비교할 수는 없으니 판단은 유보하기로 한다. 다만 영락제 봉어하기 불과 한 달 전, 몽골 친정 중에 조선의 사신 元閔生을 만난 장면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원민생은 이때 영락제를 적어도 아홉 번째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영락제의 곁에는 이미 7번이나 사신으로 조선을 찾아와 조야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던 海壽가 있었다.

황제가 元閔生에게 말하였다. “老王(태종)은 지성으로 나를 섬겨 건어물까지도 바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지금 小王(세종)은 지성으로 나를 섬기는 것 같지 않다. (중략) 짐이 늙어서 입맛이 없으니 밴댕이젓이나 곤쟁이젓, 문어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와라. 權妃가 살아있을 때에는 반찬 올리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죽은 뒤로는 반찬 올리는 것이나 술을 빚는 것, 빨래하는 것 등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內官 海壽가 황제 곁에 서 있다가 원민생에게 말하였다. “처녀 두 명을 바치라.”

황제가 기뻐하면서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아울러 20살 이상 30살 이하로 음식 잘하고 술 잘 빚는 侍婢 대여섯도 뽑아서 보내라.”<sup>74)</sup>

주제어 : 詔書, 勅書, 宣諭聖旨, 구두 메시지, 宦官, 使臣

투고일(2017. 5. 2), 심사시작일(2017. 5. 12), 심사완료일(2017. 5. 30)

74)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7월 辛巳(8일).

〈Abstract〉

Imperial Words, Spoken and Written  
- Two Dimensions of Sino-Korean Relation in the Youngle Era -

Jung Donghun \*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by which the Youngle Emperor's orders were delivered to Chosōn. Youngle Emperor, who had taken an aggressive foreign policy, gave many orders to Chosōn. His orders were sometimes documented by the hands of secretaries, and sometimes delivered in the form of oral messages by the eunuchs.

The emperor's order in the imperial edicts addressed national issues like horse trade, initiative for Jurchen, repatriation of deserters. It was about the diplomacy of the public sphere. On the other hand, the emperor's will, conveyed verbally through the Ming eunuchs and Chosōn envoys who was fluent in Chinese, was far from it. Through oral messages he asked for beauties,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and even to send food to his taste. Compared to the former, private interest is strongly reflected.

The agents of the Ming Dynasty, who had been in charge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hosōn under the command of the emperor,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th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the emperor's writings, namely the civil officials. The other group who conveyed the emperor's words was mainly eunuchs. While Chosōn was a partner of public diplomacy and a good companion of the Chinese world order for the former, for the latter, Chosōn was an indefinite spring that would fill the emperor's private desires. Among them, the latter was far more likely to be dispatched to the Chosōn court and to send the emperor's orders. And many of them were eunuchs from Chosōn. It was the opposite to the expectation of his neighbor.

Youngle emperor would have a macro and ideological dream of realizing the Chinese world order through diplomacy with Chosōn. At the same time, he expected exotic beauties, clever servants, delicious food and chefs to cook it from Chosōn. If the

---

\* Post-Doc.,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emperor's public interest and goals in diplomacy were expressed in his writings, the desire of the private realm was transmitted to the Chosǒn court through words.

**Key Words** : imperial order, edict, oral message, eunuch, envoy